

5. 무연고 사망자 처리 공고 및 의뢰
6. 노숙인 보호
7. 행여자 및 사망자 처리
8.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허가
9.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감독
10. 장애인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11. 장애인 재활에 관한 사항
12. 기타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13. 정신요양시설에 관한 사항
14. 저출산·고령화 대책 추진 총괄
15.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16. 노인실비입소시설 이용료 지원
17. 매장 및 묘지에 관한 사항
18. 사설묘지, 화장장, 납골당에 관한 사항
19. 공설묘지의 운영관리
20. 노인복지업무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1. 노인여가시설 등록 및 관리
22. 재가노인복지 사업
23. 노인일자리사업 실시 및 지원
24. 불우노인 지원 및 결연사업
25. 노인 여가활동 지원
26. 노인건강진단
27. 경로사업 실시 지원
28. 경로연금
29. 노인 지원에 관한 사항
30. 가정의례에 관한 시책의 수립 시행
31. 가정의례업소 등 실태(조사)보고
32.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33. 노인복지회관 지도감독
34.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운영
35. 보육발전종합계획 수립
36. 보육시설 수급계획 수립
37.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 지원
38. 구립 보육시설 신축에 관한 사항
39. 보육시설 설치 인가에 관한 사항
40. 구립보육시설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41.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지원
42. 용자보육시설 사후관리
43. 보육종사자 임면 및 자격에 관한 사항
44. 보육시설 평가인증홍보 및 사후관리
45. 표준보육행정시스템 지도 및 관리
46. 보육시설 지원 및 지도감독·관리
47. 지역사회 보육네트워크 구축
48. 보육료 지원대상자 책정 및 관리
49.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관리
50.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인력개발 및 교육
51. 여성단체 육성 및 봉사활동
52. 성매매방지사업 및 상담소(보호시설) 관리
53. 가정폭력방지사업 및 상담소(보호시설) 관리
54. 성폭력방지사업 및 상담소(보호시설) 관리
55. 여성상담 및 요보호여성 관리 및 선도
56. 건강가정 생활과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관련사항
57.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58. 모·부자 보호시설 운영 및 지원
59. 아동복지시설 관리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0. 요보호아동 관리
61. 저소득(모·부자) 가정지원 및 관리
62. 소년소녀가정 관리 및 지원
63.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64. 기타 여성정책, 아동에 관한 사항

제17조(종전의 제14조)중 “문화공보과”를 “문화체육과”로 하고, “문화공보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하며, “제21호부터 제27호까지”를 삭제하고, “제28호부터 제54호까지”를 “제21호부터 제47호까지”로 한다.

제18조(종전의 제15조)중 “환경위생과”를 “환경보건과”로 하고, “환경위생과장”을 “환경보건과장”으로 하며, 제10호, 제14호, 제17호, 제20호, 제21호,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4호를 삭제하며, “제25호부터 제51호까지”를 “제24호부터 제50호까지”로 하고,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52호부터 제84호까지” 및 “제86호부터 제87호까지”, “제90호”를 삭제하고, “제85호”를 “제51호”로 하며, “제88호부터 제89호까지”를 “제52호부터 제53호까지”로 하고, “제54호부터 제7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환경기술인 선임 및 교육

14. 유독물 영업자 등록(제조, 사용, 보관, 저장, 판매)
17. 환경관련 진정, 민원처리
20. 유독물관리자(양성자) 교육
21. 환경오염 배출업소 현황 전수조사
23. 생활소음 관리
25. 환경오염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추진계획 수립
54. 환경관련 정책, 시책, 현안사항 업무
55. 환경사범 수사 업무
56.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57. 자동차배출가스 정밀조사
58.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검사
59. 자동차공회전 단속
60. 사업장폐기물처리업 허가·신고(변경)
6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신고(변경)
62.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변경) 및 처리실적보고
63.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관련 업무
64. 폐기물재활용신고
65.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신고
66.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신고
67. 지정(감염성)폐기물 처리증명 확인(변경포함)
68. 폐기물인계·인수서 관리
69. 폐기물 연간 지도·단속 종합계획 수립
70. 방치폐기물, 순환골재 관련업무
71. 폐기물처리업체 지도·점검, 행정처분
72.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업체 지도·점검
73. 사업장 일반 및 건설폐기물관련 각종 민원처리
74.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변경) 관련 업무
75.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업체 지도·점검
76. 폐기물처리담당자 법정교육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위생과) 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종합지도계획수립 시행
2. 공중위생접객업소의 허가(변경) 및 신고(변경)수리
3. 이·미용사 면허증 발급
4.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취소 및 업무정지
5.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설정에 따른 협의

6. 공중위생접객업소의 휴업·폐업 신고 수리
 7. 공중이용시설의 신고수리 및 지도감독
 8. 위생관련 영업신고(변경)수리 및 지도감독
 9. 위생용품 제조업 및 처리업 신고(변경)수리 지도감독
 10. 먹는샘물공동시설(약수터)관리 및 수질검사
 11. 위생관리담당자 지정(해제)신고 및 지도관리
 12. 보건소 지도감독
 13. 식품위생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행
 14. 식품위생접객업소의 허가(변경) 및 신고(변경)수리
 15. 식품판매업 신고(변경)수리
 16. 식품위생접객업소 및 소분판매업에 대한 정기 위생검사
 17. 국민 영양조사 및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
 18. 모범음식점 등 지정관리
 19. 식품제조업소 허가(변경) 및 지도관리
 20. 식품위생접객업소의 휴업·폐업신고 수리
 21. 식품용기포장지 제조업 신고 수리 및 지도관리
 22. 조리사 면허증 발급
 23. 집단급식소 신고수리 및 관리
 24. 자동판매기 등 지도감독
 25. 식품위생관련 단체 지도감독
 26.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위생감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27. 퇴폐·변태·사행위등 위반업소 지도단속
 28. 영업시간 준수여부 지도단속
 29. 위생접객업소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30. 감시 및 단속과 관련된 신고진정등 민원처리
 31. 부정불량식품과 유통식품 단속 및 수거검사 실시
 32. 무허가업소의 단속 및 조치
 33. 학교주변 유해업소 지도단속 및 처리
 34. 간이상수도에 관한 사항
 35. 소규모 급수시설에 관한 사항
 36. 위생상의 조치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하고, 제19조를 삭제하며, 제20조(종전의 제16조) “제13호부터 제20호까지” 및 “제23호부터 제27호까지”를 삭제하고, “제21호부터 제22호까지”를 “제13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며, “제28호부터 제36호까지”를 “제15호부터 제23호까지”로 하고, “제24호부터 제27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쓰레기 무단투기 처리 및 단속

- 25.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관련업무
- 26. 수도권매립지 및 청라소각장 관련업무
- 27. 감량의무사업장 관리

제21조(중전의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도시관리국) 국장은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하고, 건설과장은 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으로 보하며, 건축과장은 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으로 보하고, 도시개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임업사무관·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으로 보하며, 녹지경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건축사무관 또는 지방임업사무관으로 보하고, 토지정보과장은 지방지적사무관으로 보하며, 교통행정과장, 교통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또한, 국장 산하에 프로젝트팀을 설치할 수 있다.

제22조(중전의 제18조) “제15호, 제31호, 제67호 및 제76호부터 제77호까지”를 삭제하고, “제16호부터 제30호까지”를 “제15호부터 제29호까지”로 하며, “제32호부터 제42호까지”를 “제30호부터 제40호까지”로 하고, “제47호, 제57호”를 “제41호부터 제42호까지”로 하며, “제59호부터 제65호까지”를 “제43호부터 제49호까지”로 하고, “제81호부터 제82호까지”를 “제50호부터 제51호까지”로 하며, “제15호, 제24호, 제26호부터 제31호까지, 제35호, 제39호 및 제4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52호부터 제6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5. 하수도 및 지하수사업 특별회계 운영(계약 및 지출에 관한 업무)
- 24. 도로관리계획 수립시행(도로폭 20미터 이하)
- 26. 건설공사(토목분야)의 시행 및 지도(도로폭 20미터 이하)
- 27. 자치구가 시행하는 토목사업의 조사, 측량, 설계와 시공 감독
(도로폭 20미터 이하)
- 28. 도로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
- 29. 도로폭 20미터 이하 도로노면 및 전체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 30. 도로폭 20미터 이하 도로의 노선인정과 폐기 및 변경
- 31. 도로폭 20미터 이하 사리도의 시설 및 유지관리
- 35. 지하수 사용량 검침
- 39. 지하수 수질검사
- 43.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 52. 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무
- 53.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
- 54. 지하수 이용부담금 체납액 관리
- 55.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정비
- 56. 콘크리트 포장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
- 57. 20미터 이하 도로에 관한 다음의 사무
 - 가. 도로구역 결정